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306
--------	--------	-----

제출년월일 : 94.

제 출 자 : 운영위원장

1.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4317호 94. 7. 6)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 조례중 지방의회 등의 명칭을 인적, 장소적 효력범위가 명확한 용어로 정비하며
-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의원일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조정 하기위함.

2. 주요 골 자

- 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인이내”에서 “5인이상 10인 이하”로 하되
도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제2조)
- 나. “의원을” “위원은”으로 “도의회”를 “본회의”로 “받아야 한다”를
“받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함.
(안 제3조 1항, 2항)
- 다. “지방자치단체”를 “도 및 교육청”으로
“및 지방의회의 의원”을 “도의회 의원 및 교육위원”으로 함.
(안 제5조 1항, 2항)

- 라. “의원중”을 “위원중”으로 “지방의회”를 “도의회”로
 “지방의회의장”을 “도의회의장”으로 함 (안 제6조 1항, 2항, 3항)
- 마.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하고 필요시 위원은 재검할 수 있다”로 함
 (안 제7조 2항)
-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도지사, 교육감”으로 하며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을 “자료의 제출, 설명
 또는 사업현장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으로 함 (안 제8조)
- 사. 결산감사위원의 일비 “50,000원”을 “의원일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 (별표 제2호)
- 아. 본 조례가 충청북도 조례로 존치되어 있는 것을 의회조례로 변경함.

3.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 " 제47조 제3항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5인이내로 한다”를 “5인이상 10인이하로 한다”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경우 도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제3조 제1항중 “의원을” “위원은”으로 하며 “도의회”를 “본회의”로 하고 제2항중 “받아야 한다”를 “받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 제1항및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도 및 교육청”으로 하고 제2항중 “및 지방의회의 의원”을 “,도의회 의원과 교육위원”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의원중에서 선출한다”를 “위원중에서 선출한다”로 하고 제2항 중에서 “지방의회”를 “도의회”로 하며, 제3항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을 “도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를 “회계감사보고서로 갈음하고 필요시 위원은 이를 재검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도지사, 교육감”으로 하며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을 “자료의 제출, 설명 또는 사업 현장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도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를
“도의회 의원 및 교육위원이 위원인 경우 회기와 ”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검사를 받는 기관에서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제1항중 “지방의회”를 “도의회”로 한다.

별표 제1호중 “충청북도 지방의회의장”을 “충청북도 의회의장”으로 한다.

별표 제2호중 “50,000원”을 “의원일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